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2. 20 선고 2019가단822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론 종결 2020. 1. 9.(피고 2, 3, 4, 5), 2020. 2. 6.(피고 1, 6)

판결 선고 2020. 2. 20.

주 문

1.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망 H은 권원 없이 같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였는데, 1982. 5. 17.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의 비율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, 피고들은 위 지분에 관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고,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윤도근

별지